

신고자 보호

- 신분보장**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 차별,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등 요구
- 비밀보장**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신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금지
- 신변보호**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·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
- 기타보호**
 -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밝혀진 경우 형·징계 감경 또는 면제
 -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 - 신분보장을 요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

신고자 보상

-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회복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,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

보상금 지급

- 최대 2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~20%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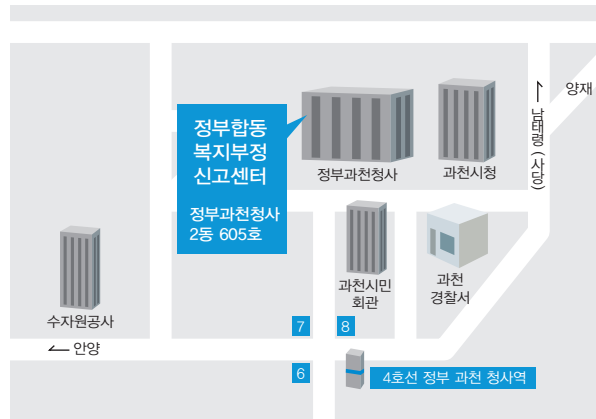
보상대상가액	보상금(최대)
1억 원	2천만 원
5억 원	7천 6백만 원
20억 원	2억 2천 6백만 원
454억 원	20억 원

포상금 지급

- 최대 2억 원까지 지급
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, 신고금액의 20%범위 내에서 2억 원 이하 포상금 지급

국민이 행복한 복지사회의 지킴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출범!

- ✓ 신고상담 국번 없이 ☎ 110
- ✓ 팩 스 02-2110-0678
- ✓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(www.acrc.go.kr)
- ✓ 방문·우편 427-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(정부과천청사)



용기있는 복지부정 신고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



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
Government Welfare Fraud Report Center

출범 배경

-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,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정부 복지정책의 신뢰도 저하
- 복지사업 관련 상담센터를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, 부정수급에 대한 통합 신고센터가 없어 국민들이 어디에 신고상담을 해야 할지 혼란
-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원스톱(One-Stop)으로 처리

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맞춤형 복지혜택 제공

출범 경과

- 2013. 5. 14 복지 부정수급 해결방안 마련지시(대통령)
- 2013. 9. 12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 구축·운영계획 보고(국가정책 조정회의)
- 2013. 10. 15 「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」 업무개시
- 2013. 10. 30 「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」 현판식
※ 국무총리·국민권익위원장, 법무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 등 참석

조직 체계



신고 대상

- 정부의 복지정책, 사업,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(급여, 보조금·지원금, 인적·물적 지원 등 일체)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
- 4대 사회보장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 급여 부정수급
- 국민기초생활보장, 교육, 의료, 주택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
- 그 밖에 복지사업·시설 보조금·지원금, 인적·물적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등

주요 복지부정 사례(예시)

☑ 보육료·양육수당(시설) 부당 지원

- 아동 허위등록, 출석부 조작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
- 무자격자 보육교사 채용, 보육교사 채용인원 부풀리기
- 급식·간식비 부풀리기 등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등

☑ 실업급여 부정수급

-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허위신고 등

☑ 국가장학금 부정수급

- 고소득자, 금융자산가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

☑ 보훈급여금 부정수급

- 사망·개가 사실 은폐, 범죄사실, 국적상실 미신고 등

☑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

- 건강보험증 부정사용
- 요양급여 부정수급
- 부양가족 변동, 사망 사실 은폐 후 부당수급 등

☑ 산재급여 부정수급

- 재해사유 허위신고
- 허위 임금자료 신고 또는 평균임금 과다 산정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
- 요양기간 중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
-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장애등급 부풀리기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
- 사망, 재혼등에 따른 자격 상실 후 연금 부당 수령 등



신고 방법

신고 상담

- 전국 어디서나 국민 없이 110 (정부대표 민원전화)

신고 방법

- 인터넷, 팩스, 우편, 직접방문

- 인터넷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(www.acrc.go.kr)
- 팩스 : (02) 2110-0678
- 방문·우편 : 427-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정부과천청사)
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

신고 요령

-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복지 부정 수급자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 제시

복지부정신고 처리절차

